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가단21053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건, 이예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공성수

변 론 종 결 2021. 1. 12.

판 결 선 고 2021. 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5.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 계약을 7,552,4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52,4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 14. C과 대출금액 3,000만 원, 약정이율 연 13.3%, 연체이율 연 19%의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계약은 매년 연장되었다. 마지막으로 연장된 날은 2019. 1. 16.이고, 그에 따른 대출 만기일은 2020. 1. 14.이다.

나. C과 피고는 1995. 5. 13. 혼인하여 부부 생활을 하다가 2018. 9. 21. 협의이혼하였다. C과 피고는 2018. 5. 24. C이 계약자로 있던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이라 한다).

다. C은 2019. 3. 11.까지 원고에게 원금 10,332,000원과 이자 26,769,008원 합계 37,101,008원을 납입하였으나, 2019. 4. 10.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2019. 5.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2020. 2. 7. 기준 22,503,932원(원금 19,668,000원, 이자 2,835,93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호증, 을 1, 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일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C은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그와 같은 보험계약자 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2,503,932원과 해약환급금 지급 예정액 7,552,454원 중 적은 금액인 7,552,4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일은 2018. 5. 24.이고,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19. 5. 10.(기한의 이익 상실일) 발생하였다. 즉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되는 채권이라 볼 수 없다.

3) 원고와 C 사이에 대출 계약은 2010. 1. 14. 체결되었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일인 2018. 5. 24.까지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일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요건인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4호증, 을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일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되는 채권이라 할 수 없다.

① 원고와 C 사이에 2010. 1. 14. 체결된 대출계약은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신용대출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일과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발생일은 시간적 간격이 약 1년 떨어져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그런데 피보전채권 발생 약 1년 전에 한 보험계약자 변경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 일반채권자인 원고가 사실상 자신의 채권에 대해 우선적 만족을 얻게 된다. 원상회복 방법인 가액배상이 채권자취소권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그 경우 다른 요건은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②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원고와 C 사이에 2010. 1. 14. 체결된 대출계약에 기초한다. C은 2019. 3. 11.까지 원금과 이자 합계 37,101,008원을 납입하였다. C은 2010. 2. 10.부터 2019. 3. 11.까지 이자를 미납한 사실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 당시 C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이 당연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C이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일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2018. 7. 27.부터 D은행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각종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일에는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5,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만으로, C이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일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원고는 C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이 감정평가액보다 크다는 이유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권액에 관하여는 증명이 없다), 설령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일 무렵 C이 원고에게 납입하는 이자는 약 20만 원이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금을 공제한 총지급금은 7,552,454원에 불과하다(C은 이 사건 보험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열

별지

목록

| 순번 | 증권번호 | 현재<br>보험계약자 | 계약일         | 계약자변경일       | 총지급금       | 상품명 |
|----|------|-------------|-------------|--------------|------------|-----|
| 1  |      |             | 1994. 2. 7. | 2018. 5. 24. | 7,552,454원 |     |